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6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송옥주・이수진・홍기원

한정애・박해철・이병진

한민수・박 정・추미애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연령·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있음에도 설치의무만 있을 뿐 사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복지를 향상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및 제85조제1항).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로당·어린이놀이터·작은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 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제85조제1항 중 "층간소음"을 "복리시설의 운영, 층간소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	
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	
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경로당·어린이놀이터·작은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복리시설의 운영・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u>층간</u>	<u>복리</u>
<u>소음</u>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시설의 운영,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	
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	
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	
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	
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